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32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박시현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B'를 운영하던 C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에 따라 C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다.

나. C는 2016. 8. 25.경 D은행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0. 27. D은행에 228,147,048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 28926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9.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5억 270만 원으로 주부인 피고가 마련하기에는 매우 고액이다. 이는 실제로는 C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다만 강제집행을 우려해 처인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실권리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C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C에 대한 구상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369,956,5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일부금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별 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E외 1필지 F아파트 G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H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01.97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E 대 19309.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I 대 260.6㎡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19569.7분의 42.9554

- 이상 피고 소유 -

